

## ‘北核 폐기, 北韓해방 촉구 국민대회’ 盛況

### - 재향경우회 등 안보단체, 나라 사랑 意志 表출 -



재향경우회를 비롯한 보수 안보단체들로 구성된 「반핵반공 국민협의회」가 주최한 「북핵 폐기, 북한 해방 촉구 3.1절 국민대회」가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공원에서 구홍일 경주회장을 비롯한 전국의 경주회원 3천여명 및 안보단체 회원 등 총 4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시민들이 북한 핵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북한 해방을 촉구했다.

이날 국민대회에서는 북핵 문제의 미해결과 전시작전통제권(작통권) 환수에 따른 한미연합사 해체에 대한 시민들의 안보불안감이 거세게 표출되었다.

먼저 경과보고 및 인사말에 나선 반핵반공 국민협의회 박찬성 운영위원장은 「우리는 오늘 북 핵문제 해결과 김정일 독재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포 해방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우리의 결기와 합성으로 북 핵을 폐기시키고 자유통일을 이룩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이어 공동대회장인 안응모 전 내무부 장관은 「얼마전 끝난 6자회담의 결과는 북한 핵의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 핵을 인정해준 것이나 다름없으며, 북한이 이미 갖고 있는 핵폭탄과 고농축 우라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원자로 폐쇄조건으로 엄청난 대북지원을 하려 든다」고 지적하고 「김정일 정권은 결코 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핵으로 대한민국을 협박해 온갖 지원을 받아 내려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안 전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은 핵 공포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며, 이런 상황은 김정일 정권이 핵 폭탄을 손에 쥐기 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건호 대한민국지키기 불교도 총연합 공동회장도 「북핵이 폐기되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한미연합사를 해체시키고 있어 우리 안보가 심히 걱정된다」며 「김정일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면 언제든 도발할 것인데, 전쟁 역지력이 낮아지는 한미연합사 해체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격양된 목소리를 토해 냈다.

한편 이날 참석 단체들은 「6자회담 당사국에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김정일 정권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살 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국제 사회가 더욱 압박을 가해야 하며, 「북핵 핵의 완전한 선포기, 그에 상응한 후지원」이라는 일괄 타결방식의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결의문을 통해 ▲3.1절인 이어서 이어받아 김정일 선군독재 종식과 자유민주통일을 위해 투쟁할 것 ▲UN과 국제사회, 온국민과 함께 북핵폐기를 위한 적극적 노력 전개 ▲북핵의 완전 폐기까지 모든 대북 지원 중단 ▲안보 기반인 작통권 환수와 한미연합사 해체 지지 ▲김정일의 반보수 대연함을 분쇄하고 북핵 해결없는 정략적 남북정상회담 반대 등을 밝혔다.

이어진 2부 市街行進시에도 수천명의 경주들을 비롯한 안보단체 회원 및 참가 시민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손에 들고 「북핵 폐기와 북한 해방」을 외치며 3.1 운동의 시발지였던 탑골공원에서 보신각 앞까지 약 1.5km 거리를 질서정연하게 행진 하므로서 3.1운동 정신이 북핵폐기 및 북한해방의 염원으로 이어졌고, 이 일대는 태극기의 물결로 뒤덮인 가운데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았다.

## 수사권 조정 - 權限과 責任을 동반한 民主的 형태로

— 이승주 박사(초당대 경찰행정학 교수)

2007년 1월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아직 완료하지 못한 일도 있습니다. 자치경찰은 국회에 걸려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은 아직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 생각하여 보류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대선 때 마다 공약으로 떠오르는 경찰을 향한 수사권 조정, 공약(空約)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 역사를 짚어보고자 한다.

로마법과 게르만법시대 초기 형사소송은 대체로 사인(私人)소추주의 소송절차가 행하여 졌고, 중세 말기에서 근세 초기에는 규문주의 소송절차가 시행되었다.

프랑스혁명을 거친 뒤 대륙법계 형사소송에서는 국가소추주의·직권주의 소송절차가 성립되었다. 한편 영국에

공복 이후 미군정 시절만 해도 수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했던 경찰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에 있어서 왜 그토록 무력하게 수사권을 내놓아야 했는지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친일과 친미적인 검찰과 달리 일제시대 인사들을 그대로 유지한 경찰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 새로운 사법제도를 창설하는 과정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없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영장청구권에 있어서 검사에게 인정된 것은 이보다 후인 1962년의 일이다. 경찰은 4·19혁명으로 들어선 장면 정권 시절 수사권 되찾기에 나섰다. 5·16쿠데타로 물거품이 되었고, 오히려 개정 헌법에 영장청구 권한이 검사에게 있음을 명시, 수사권의 주체가 검찰이라고 뜻을 밝혔다.



수사권독립 문제는 1980년 제5공화국 이후 간헐적으로 논의 되어오다가, 「국민의 정부」 출범 직후부터 불붙기 시작하여, 「참여 정부」 들어 정점에 달했다. 두 정부 모두 경찰 수사권 독립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정부들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형사소송은 고려 이전에는 대체로 사인소추주의 소송절차가 행하여 졌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규문주의가 시행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1912년 조선형사령(朝鮮刑令)에 따라 일본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한국에도 대륙법계 직권주의 소송절차가 도입되었다.

8·15 광복 뒤 미군정에 의하여 1948년 군정법령 제176호(형사소송법의 개정)가 공포되어 영미법계 당사자주의 소송절차가 도입되었다. 이 법령은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옹호를 위하여 구속영장제도도 변호제도, 보석제도의 확충과 인신보호제 등을 시행함으로써 영미법계와 대륙법계가 공존하게 되었다. 1954년 형사소송법을 제정·공포하였고, 그 뒤 11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른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경찰에게 수사권을 줄 것이냐가 큰 문제(이슈)였으나 당시 엄상섭 입법위원 등의 발언록을 보면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고 검사에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나 이론상으로 옳다고 보면서도 당시 상황에서는 경찰과소가 우려된다면 오늘날 견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의 기형적 수사권한을 검찰에게 주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제196조 규정의 입법이 추진됐던 것이다.

참여정부 수사권 조정위원회로 참여한 서울대 조국교수는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하여 검찰, 경찰 및 민간위원은 △헌재 사법경찰관리의 대부분은 △헌재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보고나 검사로부터의 지시없이 사건을 인지하고, 고소, 고발을 접수하여 수사하고 있다. △검사의 수사지휘는 실제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과정 전체에 미치지 못하며, 향후 송치 전 검사의 수사지휘의 범위는 대폭 줄어들어야 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2007년에는 참여시민정·공포하였고, 그 뒤 11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른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경찰에게 수사권을 줄 것이냐가 큰 문제(이슈)였으나 당시 엄상섭 입법위원 등의 발언록을 보면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고 검사에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나 이론상으로 옳다고 보면서도 당시 상황에서는 경찰과소가 우려된다면 오늘날 견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의 기형적 수사권한을 검찰에게 주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제196조 규정의 입법이 추진됐던 것이다.

(2면으로 계속)

## 전국 市·道會 사무처장 회의 개최

### - 당면 현안 및 조직 활성화 대책 토의 -

경우회는 지난 3월 7일 오전 11시 구홍일 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앙회 집행부가 참석한 가운데 전국 시·도(특별회) 사무처장 회의를 갖고 일반 업무지시 및 조직발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구홍일 중앙회장은 조직운영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 시도 사무처장들에게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우리 경주회가 의미있는 5.16 민족상을 수상한 것은 일선에서 힘써준 여러분들의 공동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지난 3.1절 국민대회에 많이 참석해 주신 전국의 경주들을 바라 보면서 이제는 조직활성화의 기쁨이 잡혀 간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고 피력했다.

이어 구 회장은 「사조직 형태의 각종 모임들을 공조적인 경주회로 이끌어 내는 한편 전·의경 출신 회원들의 등록을 지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회원들간의 단합을 도모하고 조직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자」며 실무 책임자인 사무처장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경주회는 매년 5월 중앙회 정기총회 및 11월 경주의 날에 수여하던 중앙회장 추대, 경찰청장 포상을 앞서는 매년 4월 시·도(특별회) 총회시 수여할 방정임을 밝혔다.

또한 전국 시·도회 사무처장들에게 ▶정년퇴직자 및 경주회 활동 비참여자, 전·의경 전역자들에게 대한 등록 권장 ▶회원증을 발급받은 회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 ▶전현직 유대강화를 위한 일선 지휘관들의 명예회장 추대, 경찰 행사시의 방문 격려, 각종 캠페인 등에 적극 참여하는 협조 체계 구축 등을 당부하는 한편 당면현안에 대한 토의를 가졌다.



# 국민을 위한 수사권 조정, 이제는 결단을 !!

전 근대적인 二重搜查 구조 속에서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수사권 조정을 위해 온 국민의 여망 속에 경·검 간의 구체적 대안협약이 여·야 정치권의 열띤 토론이 전개되고, 사상 最多 인원이 참석한 입법공청회를 거쳐 여·야 국회의원들의 「형소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18개월 동안이나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 1. 日帝의 잔재인 검사의 독점적 수사구조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일본경찰은 이미 57년전(1948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전근대적인 상명하복의 警·檢 관계를 상호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고, 경찰이 독자수사권을 갖게 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검찰은 존경을, 경찰은 더 큰 신뢰를 받고 있다. 우리도 성숙된 민주사회의 여건에 맞게 인권보호를 위한 적절한 통제장치를 두고, 경찰과 검찰은 경쟁과 협력의 상호보완 관계로 발전되어야 한다.

### 2. 수사기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시분권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지구상에 수사권 없는 경찰은 한국뿐이며 오늘날 전세계의 형사소송절차는 기소의 주체와 수사의 주체로 분리되어 경찰과 검찰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추세에 있으나,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헌법에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수사권(개시·종결), 공소권, 형집행권 등을 독점한 막강한 검찰이 1차 수사기관화 하고 있으므로 警·檢간 수사권의 분배로 견제와 경쟁을 통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면 국민의 권익과 인권은 크게 신장될 것으로 확신한다.

### 3. 더 이상 자질문제, 인권보호라는 구실로 경찰수사권 현실화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지난 20년간 4년제 경찰대학을 통한 세계 최고수준의 정예간부의 양성, 사법·행정고시 합격자 특채, 간부후보생 배출, 법학전공 수사요원 특채, 조사요원 간부화, 인관담당관 배치, 유급 자문번호사제 도입, 피해자 보호팀 운영 등의 자질향상과 인권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선진국 수준의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을 갖추었고 순경채용자의 75%가 대졸학력 이상 수준이 되었다. 따라서 해방이후 60년간 주장되어 온 경찰수사권의 시기상조론은 이제 그 명분을 잃었다.

### 4. 수시분권 요구는 기관 이기주의적 바깥 다름이 아닙니다

범죄사건(연간 160여만건)의 97%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음에도 경찰은 법률상 수사주체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연간 사건관련자 150여만명이 경찰과 검찰에서 중복조사를 받음으로써 시간과 경제적 손실이 연간 수백억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국민의 불편해소와 사법서비스 편익증진을 위해 경찰의 독자수사권을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